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추가 면책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면책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사기, 범죄행위, 위법행위, 불법적 탈루행위 또는 악의적, 불법적, 의도적인 비정직한 행동에 의해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고용인으로서 피고용인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계약사항 또는 의무의 위반으로 고용관계에 의해 야기된 손해, 사망, 질병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
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
4. 발생한 손해가 피보험자 전문영역의 의무위반으로 기인되지 않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5. 명예훼손, 명백한 중상모략 등에 의하여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6.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의 지불 불능이나 파산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
8. 피보험자나 피보험자 관련된 회사 등에 의하여 판매, 공급, 제작되는 생산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9. 피보험자가 전문인으로써 전문직업 업무 수행 중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 손해 (분실, 도난 포함)로 발생하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11.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12. 벌금, 과태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에 의해 가중된 손해,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13. 피보험자의 법적 배상책임을 가중시키는 계약이나 기타 합의, 약정, 명시적인 보증 또는 하자담보 제공에 의해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에게 가중된 손해. 단, 그러한 계약, 합의, 명시적인 보증, 또는 하자담보의 제공이 없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4. 피보험자의 특정 용도의 적합성에 대한 의사표현, 품질 보증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
15. 손익 손실, 매출 손실, 생산 손실, 비즈니스 기회 손실, 데이터 손실, 예상되는 이익 또는 절감 손실과 같은 결과에 따른 손해
16. 피보험자의 전문직업과 관련된 서류의 도난, 분실 또는 파손된 손해 및 재제작비용 손해. 단, 서류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나 전자매체를 포함합니다.
17. 피보험자가 연령, 출신, 성별, 국가, 종교, 결혼 여부 등과 관련한 차별로 생긴 손해
18. 추정비용 또는 기간 또는 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하여 생긴 손해
19.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누출, 오염, 핵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직, 간접적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20.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 또는 어떠한 물질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중

류의 오염 및 오염제거를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

21. 석면 침착증으로 부터 발생한 법적인 책임과 석면 및 석면제품과 석면을 함유한 제품의 존재, 생산, 취급, 처리, 제조, 판매, 배급, 저장, 사용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및 암을 포함한 질병
22.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인지된 손해 또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 기인한 손해 및 보험 가입 이전에 효력이 있던 타보험의 보험회사에게 고지된 상황으로 기인한 손해
23. 피보험자가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소유, 관리, 사용되는 토지, 빌딩, 항공기, 잠수함, 배, 차량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24. 피보험자의 사기, 부정 및 범죄행위 또는 피보험자의 음주상태나 약물복용상태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25. 피보험자가 제3자의 금품을 대리하여 금융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사고에 기인한 손해
26. 피보험자가 전문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27. 피보험자가 도박, 사행, 유흥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기인한 손해
28. 피보험자의 폭행, 언어폭력, 성폭력, 성추행 등에 의한 손해
29. 피보험자에 기인한 질병감염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에 기인한 손해
30. 피보험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
31. 피보험자의 돌봄(케어)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32. 피보험자의 친족에 입힌 손해
33.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피보험자의 의료보조행위로 생긴 손해
34.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
35. 공인되지 않은 특수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
36. 식중독사고에 기인한 사고
37.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타인의 명예훼손 및 비밀누설에 의한 손해
38. 보험기간 중에 보험회사에 통지 또는 승인되지 않은 자가 수행한 행위로 인한 손해 또는 탈퇴한 피보험자가 탈퇴한 후에 수행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9.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
4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

<용어의 정의>

- 요양보호사 재가급여 서비스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 장(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 23 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 1 항 제 1 호(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에 한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방문요양이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의미합니다.
- 방문목욕이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의미합니다.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용)

보험회사는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추가 면책 특별약관 제 9 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공하는 방문목욕 중에 피보험자가 보고, 관리, 통제하는 목욕기구에 입힌 재물손해(도난 및 분실 제외)로 인해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방문목욕이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의미합니다.

본 보험증권 또는 특별약관에 포함된 모든 조건 및 면책사항들은 이 특별약관과 상충되지 않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적용 추가특별약관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용)

보험회사는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추가 면책 특별약관 제 38 조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보험회사에 통지 또는 승인되지 않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기관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본 보험증권 또는 특별약관에 포함된 모든 조건 및 면책사항들은 이 특별약관과 상충되지 않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형사방어비용담보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행한 업무 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본 보험증권 또는 특별약관에 포함된 모든 조건 및 면책사항들은 이 특별약관과 상충되지 않는 변경되지 않습니다.